

# 군비행장 소음기준 완화 반발 확산

광주시의회 법안반대 긴급 건의안 채택

대책위, 이전 촉구 30만 서명운동 돌입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지원 기준 축소 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대책위(공동대표 국강현·임형철)는 공군 전투비행장의 소음 피해 대책마련과 함께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광주시의회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긴급 건의문을 제작해 국회와 한나라당·민주당·국방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대책위(이하 대책위)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즉각 이전하라”며 “군 공항이전을 촉구하는 광주시민 30만 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지난 2008년 국방연구원에 ‘광주 군 공항 종합발전방안’ 용역을 의뢰한 결과 무안공항이 최적지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국방부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전투비행장 이전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가 용역결과를 근거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지역으로 광주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것으로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전남도는 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권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청각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 시장과 박 지사가 광주 군 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즉시 합의하도록 3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8일 열리는 제19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방부에 제출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75㏈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방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추진대책위원회가 7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전투기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광주 군비행장을 조기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화순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잇따라

## 지자체 공무원 공짜해외여행 감사 요구

전완준 전 군수의 낙마로 오는 4월 27일 치러질 화순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이르고 있다.

7일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배동기(55·전 화순군수)씨가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앞서 등록 개시 첫 날인 지난 4일에는 민주노총당 백남수(48·수의사)씨와 무소속 민병희(51·전 전남도교육위원회 부의장)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밖에도 김형래(54·동북농협장), 구충곤(51·전 남도립대 총장), 임호환(66·전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흥이식(53·전 남도의원)씨 등이 거론

되고 있다.

또 오는 16일과 23일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호경, 전현준(전완준 군수 친형) 전 군수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후 이들의 출마 여부도 관심이다. 화순군 재선거 후보자 등록은 4월 12일 ~ 13일이며, 14일부터 선거일 전인 26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화순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형제군수’ ‘부부군수’ 등의 집안싸움과 ‘역대 군수 3명 사법 처리’ 등의 오명을 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행정안전위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짜 해외여행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감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법인 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재무장시끼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에 공짜 해외여행의 문제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공무원의 청렴의무에 위배된다’고 회신했고, 감사원은 ‘뇌물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형법상 처벌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

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

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